**대한산부인과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여성 건강을 위해 진료에 묵묵히 매진하시는 여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3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은 모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모든 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무과실 보상에 대한 부분이 산부인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고 이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이 의료분쟁조정법 및 그 시행령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합리한 점을 제시하며 나아가 서명으로 결의하여 우리의 단합된 힘을 알리고자 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면적 목적과 달리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의 절차는 의료분쟁 발생 시 당사자 혹은 그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됩니다. 피 조정인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는 경우 조정중재원의 감정부가 의료사고의 조사를 개시하고 60일 이 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면 조정부가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모두 조정을 인정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불필요한 법정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1. 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사고 감정부 감정위원의 구성입니다**.

의료 사고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감정부는 총 5명의 감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의사 2명, 법조인 2명(검사 1인은 반드시 포함),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됩니다. 즉, 비 전문가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감정위원들의 감정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결정을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사고의 과실여부 판정에 비전문적인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강제출석과 현지실사로 인하여 병원 업무의 방해가 우려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28조에는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피신청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강제적인 출석과 현지실사를 통해 병원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또 다른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감정 후 조정의 단계에서 신청인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언제든지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정부에서 과실을 판정한 이후에는 과실이 인정되면 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법조인 2명 (판사 1명 포함), 의료인 1명, 시민단체 추천인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결의 방법 역시 다수결로 하여 조정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조정결과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받아들이면 법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사안이 종료되나, 어느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신청인은 감정부가 조사해 놓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원이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증거수집기관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4. 원천징수방법의 손해배상금의 대불제도 입니다.**

만일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파산 등을 하게 되어 조정의 과정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재원이 대불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불금의 재원은 의사가 진료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에 청구하는 지급금액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상금을 분쟁 해당병원이 아닌 모든 병원에 연좌하여 부담하라는 전근대적 발상이고 결과적으로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

**5. 무과실보상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산부인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46조에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시행령 21조에서 정부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상금을 50: 50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 부당함은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의료관련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법의 부당성을 동료 의사들에게 널리 알리고 위와 같은 부당함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의료분쟁조정법 27조 8항에 나타난 것처럼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조정신청이 각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법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새로운 악법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의료환경은 더할 수 없이 열악해지고 정부는 의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정부에게 우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서명운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정부는 우리들이 분열된 모습을 보일 때 이를 이용해 우리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모든 정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회원들의 서명으로 결의하여 우리의 단합된 힘을 알리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동참을 바라며 주위에 혹시 이 법의 부당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를 알리는 일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건승을 바라며 이 법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위에 제시한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 조항의 해결을 요구한다. 충분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법의 시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회원들의 서명으로 이를 결의한다.**

|  |  |  |  |  |  |
| --- | --- | --- | --- | --- | --- |
| **날짜** | **의사 면허번호** | **근무처** | **이메일주소** | **이름**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